

NEWS LETTER

2024-10-15

Legal Issue

- 해외 클라우드(AWS 등)에서 개인정보를 보관,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AI 만난 리걸테크, 성장과 한계

MINWHO News

- 유명 강사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사건에서 승소



Legal Issue

해외 클라우드(AWS 등)에서 개인정보를 보관,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김경환 대표변호사

클라우드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고객 개인정보의 보관 및 처리를 AWS, 알리바바 등의 해외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경우 국외 이전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첫째,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은 국외 이전에 해당한다.

둘째, 통상적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개인정보를 보관 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공 또는 위탁 중에서 위탁으로 보고 있다.

셋째, 위탁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이전의 경우라도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또는, 해외 클라우드 업체가 ISMS-P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고서 개인정보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조치, 그리고 인증 받은 사항을 해당 해외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한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정리하면, 고객 개인정보의 보관 및 처리를 AWS, 알리바바 등의 해외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다. (다만 이 경우 위 제3호나 제4호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외에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이 필요하거나 국외에서 개인정보 보관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다만 특정 업무가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제품의 성격 및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또,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결국 정보주체가 특정 서비스에 가입하고 그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의 동의가 없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2023. 9. 22.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클라우드 이용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의 망분리 의무(또는 인터넷망 차단 조치 의무)는 면제되고 대신 가벼운 인터넷 차단 조치 의무로 갈음할 수 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AI 만нан 리걸테크, 성장과 한계

양진영 대표변호사

법률 서비스의 혁신은 더 이상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인공지능(AI)이 리걸테크(legaltech)와 만나면서 혁신을 위한 변화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리걸테크(legaltech)는 기술(technology)과 법률(legal)의 결합어로, 법률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해 기존 법률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과 리걸테크는 판례 검색 등 단순한 영역을 넘어 법률계약관리(특히, 상표 등 지적재산권 관리, 계약수명주기 관리, 문서관리), 법률연구(입법동향 파악 등), 법률고객관리(사건 및 고개정보관리), 법률플랫폼(변호사 마켓플레이스, 분쟁해결 플랫폼 등), 법률답변 서비스(챗봇), 법률문서작성(브리핑문서, 요약문서)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다.

법률 계약 정보에 관련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의 도움으로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간단한 법률문서 초안작성, 계약서 검토 등의 업무도 AI를 통해 할 수 있다. 법률소비자는 표준화된 법률 문서 서식을 제공받음으로 전문가 도움 없이 법률문제를 해결하거나, 법률챗봇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혼이나 성범죄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관해 대면 상담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법률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지식 간극이 좁아지고, 법률서비스를 AI가 일정 부분 대체하면서 법조분야 위기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리걸테크는 AI와 결합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계도 존재한다.

먼저, 정확성과 공정성의 문제이다. 법률분야는 판례, 사례, 국내법령, 해외법령 등 고려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의 도출이 까다롭다. 할루시네이션(환각), 데이터 편향성으로 인해 AI의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블랙박스 현상으로 인해 AI의 판단 근거가 불분명하다. AI가 내놓은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률소비자는 경제적인 피해, 인신상의 문제 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법적인 결론은 하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으며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공정한 답변이어야 한다. 최근 여러 AI 법률서비스 챗봇이 등장했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라는 멘트로 끝맺고 있다. 리걸테크 개발자들은 AI가 완벽한 수준의 답안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일정 정도의 수준까지 답변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법률의 복잡성으로 인해 결국에는 법률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EU AI법은 법 집행, 사법 분야를 고위험 분야로 지정했다.

다음으로, 학습데이터 확보와 저작권, 개인정보의 문제이다. 법조계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는 속도가 더딘 편이다. 로펌마다 서면이 전자화된 수준과 형태가 다르며,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도 많지 않다. 법원 또한 민사소송에는 전자소송을 도입했지만, 아직 형사소송 분야에는 전자소송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습할 양질의 데이터를 다수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학습데이터로 사용될 법률 자문서나 소송 서면의 저작권 귀속문제, 개인정보와 민감한 사생활, 기업의 영업비밀 노출 우려 등 여러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변호사 대신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챗봇이 변호사법 위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양형예측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로톡,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AI개발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심사를 받기도 했다.

리걸테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AI의 한계인 할루시네이션, 데이터 편향성, 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법률 시장을 이해하는 엔지니어 및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법률 정보와 서면의 표준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리걸테크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학습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변호사법 위반 문제와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문제도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리걸테크 관련 규정의 개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I가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떠한 역할은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야 개발자들도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게 될 것이며, 법률서비스 제공자, 법률소비자 모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리걸테크와 AI의 결합은 법률 서비스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법적, 윤리적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리걸테크가 지닌 한계 요소를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8-3424
yangjy@minwho.kr

MINWHO NEWS

유명 강사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유명 강사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강사 A를 대리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A와 상대방인 피고 B 역시 같은 학원 소속의 강사이고, 피고 C는 B의 직원이었는데, A는 B와 C가 인터넷상의 댓글 등으로 A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며, 자극적인 표현으로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A를 대리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계속되었고, 그 결과 손해배상금 5,000,000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댓글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B의 C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성립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사건에서 승소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자사 서비스에 게재한 매물정보 등의 삭제를 청구하는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활용한 원고의 매물정보는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를 아웃링크 형식으로 활용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과 피고의 활동으로 원고 및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였으며,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타워 역삼 11층 / 2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